

##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ay to Make Local Governments' Grant Management More Responsible

이 지 은\*\*

LEE, JI-Eun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의 책임성 제고방안

지방보조금제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책임성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왜곡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의민주제 구조와 보조금 운영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성 저해행위를 보조금의 근본 성격인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서 이해하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진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지방보조금, 위임자-대리인 이론, 책임성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논문 접수일: 2019. 2. 11, 심사기간: 2019. 2. 11 ~ 2019. 3. 25, 게재확정일: 2019. 3. 25.

The gra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ocal governments can enhance their responsibility by themselves with the increased autonomy of fiscal management. However, expanding the autonomy of fiscal management does not always guarantee to raise responsibility. A fundamental reason it is inevitable for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o be distorted lies in the principal-agent relationship necessarily created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operation of grants. The study explains irresponsible behaviors arising in local governments' grants management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authorizers and agents. Also, it diagnoses the problems resulting from such relationships with some cases in the audit reports, and then gives some suggestions.

□ Keywords: Local Grant System, Principal-Agent Theory, Responsibility

## I. 서론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분권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근본가치인 자율과 책임의 연계를 실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보조금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지역의 민간단체에 재원을 지원하여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윤태섭 외, 2016: 151). 어떠한 보조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해당 서비스를 누구를 통해서 공급할 것인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재원인 것이다(유태현·한재명, 2007: 46). 즉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책임성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내용, 규모, 지급대상 등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하고, 반대급부 없이 특정 집단에게 지급한다는 재원의 특성상 지역주민이 아닌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련된 행위자들

의 사적 지대를 추구하기 위해 지출될 우려가 크다(양지숙·김민정, 2015: 74-75, 김상현, 2012). 즉 지방보조금은 ‘지방’과 ‘관료’의 특성이 발현되는 재원으로 지역주민이 아닌 지방보조금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특정인의 목적을 위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을 경우 행위자들 간의 접근성이 높는데 반해 외부의 감시는 중앙정부에 비해 소홀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조금 운영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보조금 운영의 직접적인 행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관료, 보조사업자 등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위임자의 이익이 아닌 대리인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적격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에 본 연구는 위임자-대리인관계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흐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위임자-대리인 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단계별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지방보조금 운영 단계별로 적발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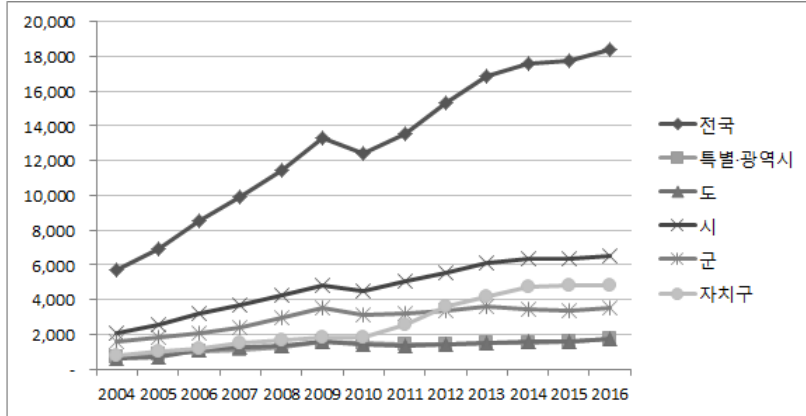
### 1.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수요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민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sup>1)</sup> 지방보조금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규모의 증대와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총액은 2016년 기준 약 18조 4천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총액의 8.24%를 차지하며, 이는 2004년 대비 222% 증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총액이 2004년 대비 130% 증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변화 추이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대비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와 도의 지방보조금은 각각 1.75조원(3.5%), 1.77조원(2.9%)인 반면 시·군·구의 경우 각각 6.5조원(11.4%), 3.5조원(12.2%), 4.8조원(17.9%)으로 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단위: 억원)



〈그림 1〉 지방자치단체유형별 지방보조금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2004-2016년), 「지방재정연감」, 바탕으로 구성

주: 1) 일반회계, 결산, 총계 기준

2) 지방보조금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3) 지방보조금비중=지방보조금/세출결산액×100

이러한 지방보조금의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체 예산 및 자체재원의 추이 대비 급격한 증가형태를 보일 경우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기현, 2011; 윤태섭·배정아, 2016; 김애진, 2017; 정재호, 2017). 또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지역의 민간영역에 지급한다는 재원의 성격과, 사업의 내용 및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지역주민이 아닌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사적 지대를 추구하기 위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양지숙·김민정, 2015: 74-75, 김상헌, 2012).

## 2.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규정

중앙정부는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리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 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자율과 책임의 연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권한을 확대하였다. 지방보조금 운영에 제기되는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통제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부서별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한 열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행정안전부, 2017: 38-40).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운영되어오던 관리 규정을 「지방재정법」(2014.05.28. 공포) 개정으로 법제화 하였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 1)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공모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심의를 해야 하고, 실적이 미흡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2) 지방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때 1개 사업 당 계좌는 1개로, 사업에 따라 별도로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명시되도록 개설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해야 한다. 이는 지방보조금이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내용을 확정하게 되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여부, 사업내용의 유사·중복, 보조금 지원 불가단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교부신청 내용의 적법성, 사업목적과 예산의 일관성, 보조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요건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를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보조금 계좌와 보조사업자의 일치여부, 자기부담금의 예치 등을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부취소 및 환수가 가능하다.

또한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즉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 3) 지방보조금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며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지방보조금 집행과정의 핵심은 사업내용과 회계 관리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보조사업자는 해당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즉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사업계획변경, 사업인계, 사업의 중단 및 폐지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은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 집행은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해야 하며, 사업기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행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행위 적발시 해당금액에 대해 환수하고, 미집행잔액과 결산이자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결제용 전용카드는 반드시 법인 명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표자의 결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집행한 후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해야 하며, 보조금 통장과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경비로는 지출이 불가하다. 즉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사업 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의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다.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와 같은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보조사업비에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자기부담금의 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집행 비율

이 계획보다 낮을 경우 자기부담금 사용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 4)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방보조금의 남용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근거하여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 운영과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방보조금 운영단계별 과업내용

구 분	과업내용	
	담당 공무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보조사업 공모절차 이행</li> <li>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li> <li>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li> </ul> </li> <li>지방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li> </ul> </li> <li>지방보조사업지 관리카드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내용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서 제출</li> </ul> </li> <li>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li> </ul>
보조금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요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 중복사업 여부</li> <li>사업계획서의 적정성</li> <li>교부신청서 및 교부조건(보조금 계좌, 자기부담금금 예치) 이행 검토</li> </ul> </li> <li>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명시</li> <li>교부항목에 따라 사업진도, 추진 상황 확인하여 교부</li> <li>보조금 전용 계좌로 보조금 교부</li> <li>보조금 교부현황 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li> <li>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 전용 계좌 개설</li> <li>자기부담금금 이체</li> </ul> </li> </ul>
보조금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집행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li> </ul> </li> <li>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규정 준수여부 확인</li> <li>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운영</li> <li>집행지침 및 사업비 회계처리 개별교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li> <li>사업내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 후 보조금집행</li> <li>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li> <li>지방보조금 회계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보조금 별도계정으로 지출</li> <li>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 금지</li> <li>회계연도 내 보조금 집행</li> <li>각종 수당 원천징수 납부</li> <li>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li> <li>자기부담금비 집행</li> </ul> </li> </ul>
정산 및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규정 준수여부 검토</li> <li>증빙자료의 적절성 검토</li> <li>적발사항의 사후조치</li> </ul> </li> <li>집행잔액, 이자, 수수료, 부당집행 환수금 반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률 감소시 해당 보조금 감액조치</li> </ul> </li> <li>보조금 취득재산에 대한 관리</li> <li>사업계획서, 사업실적·지출내역 등에 대한 성과평가</li> <li>성과평가 결과 및 중요재산 현황 공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제출</li> <li>집행 잔액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자 포함하여 반납</li> </ul> </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1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 2017.09.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바탕으로 구성

### 3.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

#### 1)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위임자(principal)-대리인(agent) 이론에서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자신들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맺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Jensen & Meckling, 1976). 이러한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는 한 사람(위임자)이 다른 사람(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에 따라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있을 때 성립한다(전상경, 2012: 315).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생성되는 위임자-대리인의 관계는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관료, 보조사업 관리 담당자-보조사업자, 지역주민-보조사업 관리 담당자, 지역주민-보조사업자 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보조사업을 위임한 사업담당자와 실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보조사업자와의 위임계약은 보조사업 관리 담당자를 통해 성립되고, 이들은 계약 성립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임자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위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대리인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위임자는 대리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동안 자신이 아닌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먼저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위임자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위임자가 대리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대칭 정보, 즉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위임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일어날 수 있다(전상경, 2012: 304).

대리인이 결정된 이후에는 거래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관찰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즉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작동할 수 있다(전상경, 2012: 310). 대리인의 행동을 위임자가 모두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은 위임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유인인 도덕적 해이가 작동하여 위임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위임받은 권한과 자원을 사용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역선택은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며, 도덕적 해이는 계약체결 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교용, 2003).

지방보조사업 또한 의사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 먼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임자는 역선택

이 발생하여 부적절한 대리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대리인인 보조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긴 채 유리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정보만으로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자의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오윤섭·홍수완, 2015: 26). 이에 따라 부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대리인인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사업을 소홀히 진행하거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목표가 아닌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위임자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보조금 대상 및 관리과정의 구분을 달리하였다(황혜신, 2005; 오윤섭·홍수완, 2015; 서정섭·김성주, 2016; 황소화, 2016). 황혜신(2005)은 민간위탁 운영과정을 계약체결, 계약내용, 감독시스템, 계약이행으로 구분하여 대리인의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오윤섭·홍수완(2015)은 예산편성, 교부, 집행, 사업관리로 분류하여 국고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서정섭·김성주(2016)는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예산편성, 교부, 집행, 사후관리 전 과정상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황소화(2016)는 지방보조사업 운영절차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교부, 집행,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지방보조금에 적용하여 운영 과정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유형화 하였으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과정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임자-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조금 교부단계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교부조건의 미이행 및 허위보고의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지방보조금 운영단계별 문제점

구분	문제원인	책임성 저해 행위
보조사업자 선정	숨겨진 특성 → 역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 사업자 선정</li> <li>• 보조금 중복지원</li> <li>• 공모절차 미준수</li> <li>•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위반</li> <li>•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미등록</li> </ul>
보조금 교부	숨겨진 행위 → 도덕적 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조건 미이행, 허위 이행 확인 소홀 (부적격자에게 보조금 교부)</li> <li>• 보조금 교부규정 위반</li> <li>• 교부조건 부여 의무 소홀</li> </ul>
보조금	숨겨진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집행관리 태만</li> </ul>

구분	문제원인	책임성 저해 행위
집행	→ 도덕적 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규정에 따른 집행여부 관리 소홀</li> <li>- 원천징수의무 소홀</li> <li>• 사업계획 이행관리 소홀</li> <li>- 사업내용 임의 변경 관리 소홀</li> <li>• 보조사업자 관리 태만</li> <li>- 관련자 교육의무 소홀</li> </ul>
정산 및 사후관리	숨겨진 행위 → 도덕적 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 및 결과보고 이행여부 확인</li> <li>• 사업수행 검토 소홀</li> <li>- 사업계약내용 이행여부</li> <li>• 보조금 정산보고 관리 소홀, 미조치</li> <li>- 횡령, 부적정 정산 미조치</li> <li>- 증빙서류 관리 미이행</li> <li>• 집행 잔액 관리의무 소홀</li> <li>- 부적정 집행액 반환 미조치</li> <li>- 이자 반납 미조치</li> <li>- 자기부담금비 미집행액 반환조치 소홀</li> <li>• 등록재산 부실관리</li> <li>- 임의사용 방치 등 관리의무 소홀</li> <li>• 부적정한 성과평가</li> <li>• 성과평가결과 미환류</li> </ul>

자료: 오윤섭·홍수원(2015), 수정

따라서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핵심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리인을 선택할 것인가와 선택된 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위임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권순만·김난도, 1995: 79). 즉 대리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와 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극복방안

위임자-대리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걸러내기(screening), 자기 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 경쟁(multiple agents), 정보 공유(sharing) 등이 있다.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특성을 알리기 위한 신호보내기(signaling)를 작동한다. 즉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신의 적합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가 과대 포장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허

위·과대 정보로 인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도하는 걸러내기(screening)과정이 필요하다. 즉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를 걸러내고 실제 보조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대리인을 선별해 내는 것이다.

역선택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자기 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시장조건에서 반응하는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숨겨진 특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전상경, 2012: 307). 지방보조금운영 과정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조사업 신청자가 자기부담액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경우,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책임을 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 후보자 간 경쟁(multiple agents)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역선택은 당사자들 간의 감추어진 정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정보공유(sharing)라고 볼 수 있다. 즉 보조사업자에 대한 이력 및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적절한 사업자의 선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즉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는 위임자가 관찰할 수 없는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제재, 감독(monitoring) 등이 있다.

가장 고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유인체계(incentive system)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임자는 대리인에 비해 정보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대리인의 행위를 직접 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대리인이 실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위임자를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유인체계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인센티브, 성과급 등이 있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가 작동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적 차원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전상경, 2012: 316-317).

또한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에 반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계약내용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통해 위임자와 대리인간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주체는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관리 담당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담당 관료는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대리인 자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담당 관

료의 내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담당 관료 또한 도덕적 해이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담당 관료의 도덕적 해이의 주요 원인은 지역의 이익단체로부터 포획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 및 정보 부족으로 보조사업 담당 관료가 보조사업자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거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거나, 해당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할 경우 지역 이익집단으로부터의 포획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때문에 부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발생하거나, 보조사업자의 계약 위반 행위를 묵인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다.

정부 관료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활용된다. 전상경(2012)는 조직 구성원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는 가정 하에, 이들이 대리인의 자격에서 작동하는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도, 승진 등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징계 및 인사 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는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보조사업을 위임한 관리 담당자와 실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대리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위임자인 담당 관료는 대리인인 보조사업자의 숨겨진 특성을 알 수 없어 부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계약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대리인의 숨겨진 행위를 위임자가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작동할 유인이 강하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주민의 대리인인 담당 관료는 보조사업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작동할 수 있다.

〈표 3〉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문제원인(정보의 비대칭)	책임성 저해 행위	해결방안
숨겨진 특성 (hidden characteristics)	역선택 (adverse selection)	걸러내기(screening)
		자기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
		경쟁(multiple agents)
		정보의 공유(sharing)
숨겨진 행위 (hidden action)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감독(monitoring)
		벌, 제재

자료: 전상경(2012). pp.303-323 바탕으로 구성

###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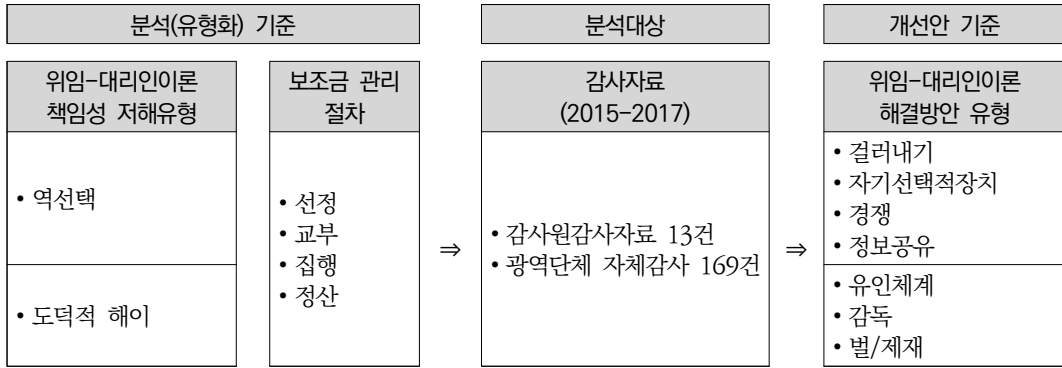
#### 1. 분석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감사, 공직비리 기동점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감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를 중앙에서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2014년 5월 28일 공포)」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2014년 11월 28일)」에 따라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근거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 2. 분석틀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분석하여, 운영단계별 유형화를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책임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보조금 관리 절차별로 부적절한 사례를 연계하여 문제를 유형화 하였다. 그리고 위임자-대리인 이론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토대로 지방보조금 운영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위해 구성한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2015-2017년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와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169건의 감사결과는 1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 문제점

구분	사례유형	사례 수(건, %)	
		개별	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 부적격사업자 선정	4	19 (11.2)
	• 중복지원	2	
	• 선정절차 미준수	13	
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이행 미확인	14	19 (11.2)
	• 교부조건 명시 소홀	5	
보조금 집행	• 지방보조금 집행관리(회계규정 준수) 소홀	30	68 (40.3)
	• 지방보조사업 내용관리(사업계획 이행) 소홀	33	
	• 보조사업자 관리	5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보고 위반사항 미조치	30	63 (37.3)
	• 보조금 잔액 부실관리	25	
	• 등록자산 부실관리	6	
	• 평가결과 환류 미이행	2	
총계		169(100.0)	



## 1. 보조사업자 선정 시 책임성 저해행위 유형

보조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부적격 사업자의 선정(4건), 유사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지원(2건), 보조금 선정절차 미준수(13건)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해당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 후 수수료만 수취할 우려가 있어 보조금의 남용과 비효율을 야기한다. 또한 사업수행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자금운영의 미숙으로 보조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하는 등의 문제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2017)의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해산·합병이 예정되어있는 농업회사 법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해당 업체가 보조금을 업체 운영비에 사용 후 실제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해산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및 보조사업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사업에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단체에 관행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울산광역시(2015)의 「2015년도 제1차 재무분야 특정감사」의 사례에서, 동일한 장소 및 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두 개의 민간단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 및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즉, 역선택이 발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정 절차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대구광역시(2017)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조사업 계약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보조사업 지원자 간의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부담금 비용을 과소로 평가하거나, 보조금액을 과다로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5〉 보조사업자 선정단계의 문제점

유형	내용
부적격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해산이 예정된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1건)</li> <li>•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 임의 선정(3건)</li> </ul>
중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사업 중복지원(2건)</li> </ul>
선정절차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처리장치 미이용 등 수의계약체결(7건)</li> <li>• 선정절차 요건 위반(3건)</li> <li>• 선급금 지급요건 위반(3건)</li> </ul>

## 2. 지방보조금 교부시 책임성 저해행위 유형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계약이 성립된 이후 위임자는 대리인의 계약내용 이행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의 행위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위임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유인, 도덕적 해이가 필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지방보조금 교부단계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리인이 보조금을 원래 의도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최종 과정이다. 그러나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먼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때 보조금 전용 계좌의 명의는 보조사업자와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명의 계좌를 용인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대구광역시(2017)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사례를 살펴보면 2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동일 계좌에 두 개의 사업비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조금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사업비를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교부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민간경상사업비를 자본적 비용으로 신청하거나,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의 운영비를 법정운영비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다.

보조금 교부 이전에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액이 사업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하여, 결국 보조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보조금 교부시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이러한 추가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경기도(2017)의 「2017년도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영화제 티켓 판매에 따른 수익금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환 및 사용용도 제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티켓 판매 수익금이 보조사업자의 자체 수익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지방보조금 교부단계의 문제점

유형	내용
교부요건 이행 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보조금 전용 통장 미개설 등 관련서류 미비(4건)</li> <li>•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위반: 자본적 경비를 민간경상경비로 신청 또는 법정운영비항목을 민간경상사업비로 신청(3건)</li> <li>• 자기부담금비 예치 미확인(7건)</li> </ul>
교부조건 명시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조건 명시 없이 재위탁(1건)</li> <li>• 수익발생에 대한 반환조건 미명시(4건)</li> </ul>

### 3. 지방보조금 집행에서의 책임성 저해행위 유형

보조금 교부 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리인인 보조사업자는 위임자가 자신의 행위를 모두 관찰할 수 없다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도덕적 해이가 작동하여 위임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분석 결과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먼저 예산편성 기준 항목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즉 민간경상사업비를 자본적 경비 또는 법정 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항목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회계기간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즉 보조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종료 후의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전라북도(2016)의 「2016년도 특정감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보조금액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 의무), 제129조(원천징수 세율)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2017)의 「2017년도 제1차 재무특정감사」에서 보조사업자가 강사료만 원천징수한 후 별도로 지급한 원고료와 교통비 등

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는 보조금 지출이 실제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업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2016)의 「2016년도 특정감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종료가 임박한 12월에 예산과목의 전용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교재와 교구, 도서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감사원(2015)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별도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 및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처럼 정산을 위조한 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이 부적격자에게 교부되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자에 대한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위기관의 감독의무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2017)의 「2017년 특정감사」에서는 보조사업 담당 관료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지방보조사업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지방보조금 집행단계의 문제점

사례	내용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회계규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항목변경: 민간경상보조금을 자본적 경비(3건) 또는 법정운영경비로(3건) 집행</li> <li>회계기간을 위반하여 집행: 사업개시 전(4건) 또는 사업종료 후(3건) 사업비 집행</li> <li>집행방식 규정 위반: 지출결의서 미작성(2건) 또는 현금지급(3건)</li> <li>인건비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의무 소홀(12건)</li> </ul>
보조사업 내용관리 소홀 (사업계획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 변경 승인 전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업비 집행(21건)</li> <li>사업변경 승인 미이행: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및 경비배분 등의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음(7건)</li> <li>보조금 횡령: 사업비 항목으로 지출 후 다른 계좌로 재수령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횡령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5건)</li> </ul>
보조사업자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른 관리의무 소홀(4건)</li> <li>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운영 미비(1건)</li> </ul>

#### 4.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서 책임성 저해행위 유형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종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발되었다. 정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연하여 보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정산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문제가 다수 확인되었다. 울산광역시(2017)의 「2017년도 제1차 재무특정감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 징구의무를 소홀히 하고, 홍보비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대금결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관련 자료의 단순 누락이라 할지라도 집행을 입증해줄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출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정산 및 결과보고를 허위로 위조하여 제출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통제할 수 없어 결국 예산의 낭비와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산과정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책임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조사업 종료 후에는 발생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잔액을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인천광역시(2016)의 「2016년 종합감사」에서 집행 잔액을 별도계좌에 보관한 채 반납하지 않은 사업자가 확인되었다. 자기부담금을 적게 할 경우 감소율만큼 보조금을 감액하고 이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제공에 이용된 경우가 확인되었다. 관리 담당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교환·방치를 예방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전라남도(2016)의 「2016년 특정감사」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이를 환수, 매각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근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 분석 결과 담당공무원이 평가결과와 환류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의 삭감 및 지원 중단 등과 같은 차후 과정으로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광주광역시(2017)의 「2017년 특정감사」에서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전년도 예산기준 10%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성과평가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중단을 조치해야 하나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은 평가결과에 대한 명확한 반영을 통해 부적절한 보조사업자가 경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해야 하며,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8〉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에서 문제점

사례	내용
정산보고 위반사항 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미보고, 지연보고 미조치(4건)</li> <li>• 정산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미조치(22건)</li> <li>• 정산 허위 및 위조 보고 관리 태만(4건)</li> </ul>
보조금 잔액 부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보조금 잔액 반납 미조치(5건)</li> <li>• 사업계획 미이행(사업량 감소)에 따른 잔액 반납 미조치(12건)</li> <li>• 자기부담금비 집행 감소에 따른 잔액반납 미조치(4건)</li> <li>• 보조금 이자 반납 미조치(4건)</li> </ul>
등록자산 부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자산을 목적 외로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산담보 제공 등에 이용(6건)</li> </ul>
평가결과 환류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삭감 및 지원중단(2건)</li> </ul>

## V. 결론: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의 책임성 제고방안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는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가 생성되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의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역선택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걸러내기(screening), 자기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 경쟁(multiple agents), 정보의 공유(sharing) 등이 있으며,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구축, 제재방안 마련, 감독(monitoring) 강화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서 책임성 제고방안

구분	책임성 제고방안	
보조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중립성 강화와 분과위원회 활성화	걸러내기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 비중 확대	경쟁
보조금 교부	• 교육을 통한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감독
	• 요건검토 및 주요 교부조건 명문화	감독
보조금 집행	• 지방보조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	감독
	• 부적정한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제재 강화	상벌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 및 결과보고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감독, 상벌
	•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환류 강화	감독, 걸러내기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걸러내기(screening)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심사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홍종현, 2015; 윤태섭·이삼주·김성주, 2016; 김성주, 2017).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보조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인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규정의 엄격성 정도 및 범위가 다르다.

다른 원인은 지방보조사업이 다양화되고,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모두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수천 개에 달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약 15명의 위원이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제 기능을 제고하여 엄격한 걸러내기(screening)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총괄적 심의역할 강조로 구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즉 실무적인 검토는 분과별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완하고, 유사중복 및 보조금운영의 방향성 유지 등 총괄적 심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추천, 선정기준, 관련 절차에 대한 조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자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대가

필요하다. 자기부담금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부담금의 규모와 충당 여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과 의지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부담규모를 증대할 경우 무분별한 지방보조사업의 신청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지방보조금이 민간이 수행하는 공공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의미가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지방보조사업의 유형이 다양하고 보조사업자별로 역량이 다르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감축을 저해하고, 역량 있는 보조사업자의 선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자기부담비율을 차별화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수행 의지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보조사업 신청자 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후에는 대리인인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여 계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단계의 업무는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 관료의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담당 관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규정에 대한 숙지 및 해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가 일정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직무변경이 빈번할 경우 전문성 및 경험부족으로 현장에서의 문제에 미흡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집행단계 또한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작동하여 위임자가 아닌 대리인의 사적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유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집행과정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위임자의 핵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임자는 대리인의 행위를 모두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간과정을 감독하고 있다는 위임자의 신호(signaling)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방대한 지방보조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사업의 선별이 필요하며, 사업비의 규모와 자본보조사업이 우선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비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보조사업의 실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크고, 지방보조금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한 관리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점검이 강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결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 사후관리에서의 핵심과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와 결과보고 및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여, 이를 차기 연도 보조사업 걸러내기에 활용함으로써 역선택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분석 결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지방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당 관료의 전문성 부족, 업무과다 등으로 정산 및 결과보고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즉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를 검토하여 허위, 누락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필요조치를 통해 대리인의 규정위반 행위를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관료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교육시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해당사항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것임을 공지하는 등 관리 담당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정산 및 결과보고에 대한 사후조치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가결과를 차기 연도 보조사업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평가체계를 세 가지 측면 즉, 평가전담조직의 활용, 평가대상사업 추출, 평가지표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성과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평가전담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평가는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보조사업 정산보고 및 실적보고에 대한 검토는 담당 사업부서에서 하되,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는 재정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부서가 주축이 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예산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주관하고 해당 결과를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과평가가 확대될 경우 담당자의 업무 부담으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사업의 유형, 사업의 규모,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여부 등에 따라 성과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즉 사업의 규모가 작거나 일회성 사업일 경우 성과평가를 간략하게 수행하는 반면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자본보조 비중이 큰 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지사업, 민간행사사업, 자본사업 등 사업 유형별로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성과평가는 지방보조사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권순만·김난도. (1995).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29(1): 77-95. 한국행정학회.
- 김상헌. (2012).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성주. (2017). 「지방보조금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5-262.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애진.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95-140. 한국지방재정학회.
- 서정섭·김성주. (20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양지숙·김민정. (2015).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 오윤섭·홍수완. (2015).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위험과 관리통제 개선방안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 유태현·한재명. (2007).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2(1):41-75. 한국지방재정학회.
- 윤태섭·배정아. (201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재조명」. 『지방재정논집』, 21(1): 73-100. 한국지방재정학회.
- 윤태섭·이삼주·김성주. (2016). 「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20(1): 161-187.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교용. (2003). 『대리인이론에 의한 조직운영의 효율화방안연구: 한국 우정사업 운영체제사례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상경. (2012).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제4판. 서울: 박영사.
- 정재호. (2017). 『지방재정 건전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 예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기현. (2011).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민간이전경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1(3): 25-45.
- 행정안전부. (각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_\_\_\_\_. (각연도). 『지방재정연감』.
- \_\_\_\_\_. (2017).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홍종현. (2015).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9): 135-168. 한국지방재정학회.

- 황소하. (2016).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을 중심으로』. 수원 시정연구원.
- 황혜신. (2005).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 행정논집』, 17(1): 1-37. 한국행정학회.
- Jensen, M. C. and Meckling, W.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305-360.
-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bai/index.do>. (검색일 2018. 05. 05).

부록: 사례분석 대상

구분	연도	지방자치단체	사례 수(건)		
			개별	합계	
감사원 감사	2015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5	8	
		•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1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1		
		•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1		
	2016	• 전라북도 기관운영감사	1	1	
	2017	•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	2	4	
		• 순천시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1		
•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1			
광역 자치단체 자체감사	2015	• 울산광역시 제1차 재무분야 특정감사	15	27	
		• 강원도 재무감사	1		
		• 충청북도 종합감사(감사번호:8)	5		
		• 충청남도 종합감사(감사번호:8)	1		
		• 경상북도 종합감사(감사번호:42)	4		
		• 제주특별자치도 특정감사(감사번호:34)	1		
	2016	• 서울특별시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5	48	
		•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감사번호:20)	1		
		• 대전광역시 종합감사(감사번호:22)	5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감사(감사번호:6)	1		
		• 충청북도 종합감사(감사번호:25)	2		
		• 충청남도 종합감사(감사번호:53)	1		
		• 전라북도 특정감사(감사번호:24)	10		
		• 전라남도 특정감사(감사번호:19)	6		
		• 경상북도 종합감사(감사번호:17)	3		
		• 경상남도 특정감사(감사번호:65)	3		
		• 경상남도 종합감사(감사번호:65)	4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감사번호:10)	7			
	2017	• 대구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2014년 이후 10억이상 민간경상보조사업 대상)	24	81	
		• 광주광역시 종합감사(감사번호: 25)	1		
		• 광주광역시 특정감사(감사번호: 2)	13		
		• 울산광역시 제1차 재무분야 특정감사	35		
		• 경기도 특정감사(감사번호:14)	7		
		• 전라남도 특정감사(감사번호:9)	1		
	합계				169